

선	기관외 장
람	



제23호(호외) 2022. 6. 20.(월)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2-1269호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1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발행 : 광양시 ▶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323, 행정2713)

[붙임 1] 광양시 공고 제2022- 1269호

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「광양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0 일

광 양 시 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과, 주민의견 청취방법 확대,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「광양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률 시행령

3. 주요내용

-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시설 설치 시 용적을 완화
-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확대(조례 제6조)
- 자원순환시설의 주거공간과의 분리 (조례 제21조의2)
- 용도지역 내 허용행위의 조정 (별표 5, 6. 7. 8. 18, 19, 20, 21, 22)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6. 20. ~ 7. 11 . (21일간)

5. 의견제출

「광양시 도시계획 조례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, 이메일(jkt7436@korea.kr), 팩스(061-797-258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첨부 :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(신·구조 대비표 포함) 1부. 끝.

[붙임 2]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내용에 후단 “공고하여야 한다.” 를 , “공고하여야 하며,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중 지역신문 또는 지역방송을 통해 입안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.” 로 한다.

제21조의2 제4항의 내용 중 “야적장 및 고물상시설에 대한” 을 “야적장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” 으로 하고, 단서 조항인 “.[단, 녹지지역, 관리지역,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야적장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제22호 나목의 고물상에만 해당한다.” 을 “.[단, 공업지역은 제외한다]” 로 한다.

조례 제5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120퍼센트 범위까지 허용한다.

가.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(이하 “필요감염병관리시설” 이라 한다)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

나.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

별표 5 2호 과목, 별표 6 2호 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

별표 7 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가목 ·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·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

별표 9의 1호바목, 별표 10의 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

별표 12호의 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(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) · 학원(기술계학원에 한한다) 및 연구소(공업에 관련된 연구소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)

별표 15의 2호차목, 별표 16 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시설(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)

별표 16 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

별표 18의 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가목,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

별표 19의 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

별표 19의 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

별표 20의 1호마목, 자목의 내용중 “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”을 “성장관리계획구역”으로 한다.

별표 21의 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

별표 21의 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

별표 22의 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(양식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는 같다),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,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3]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주민의 의견청취)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한다)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.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면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	제6조(주민의 의견청취)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한다)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.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면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,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중 지역신문 또는 지역방송을 통해 입안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.
제21조의2(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기준)① (생략)	제21조의2(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기준)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야적장 및 <u>고물상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.</u> [단, 녹지지역, 관리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야적장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제22호 나목의 고물상에만 해당한다.]	④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야적장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제22호 <u>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.</u> [단, 공업지역은 제외한다.]
1.~4. (생략)	1.~4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59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~④ (생략)	제59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~④ (현행과 같음)
(신설)	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120퍼센트 범위까지 허용한다. 가.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(이하 “필요 감염병관리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.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